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40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47호)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60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9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의원안) ·	6
2. 시행일 및 다른 법률의 개정(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의원안 부칙)	11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7일 김주영의원과 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2월 18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4월 28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주영의원안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

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2. 이수진의원안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에 대하여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을 늘리면서 자기주도적 삶의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근로(勤勞)”를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이고 본연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3. 박홍배의원안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 이용우의원안

가. 제안이유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함 (안 부칙 제2조제10항).

Ⅲ. 검토의견

1.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재 매년 5월 1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김주영의원안) 또는 ‘노동절’(이수진의원안·박홍배의원안·이용우의원안)로 변경하고, 근거 법률인 현행법의 제명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김주영의원안)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수진의원안·박홍배의원안·이용우의원안)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김주영의원안	이수진·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u>근로자의 날</u> 제정에 관한 법률	<u>노동자의 날</u> 제정에 관한 법률	<u>노동절</u> 제정에 관한 법률	<u>노동절</u>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u>근로자의 날</u>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5월 1일을 <u>노동자의 날</u>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5월 1일을 <u>노동절</u>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u>노동절</u>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4일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Haymarket) 광장에서 8시간 노동제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평화행진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인 ‘헤이마켓 사건’ 이후 1889년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결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는 ‘메이데이(May Day)’로 통용되는 날임.¹⁾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인 1923년부터 조선노동연맹회 등 노동자 조직이 주체가 되어 5월 1일을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의 명칭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으며,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등의 단체들이 메이데이(노동절) 기념식을 거행하였음.

이후 1957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공산주의 진영에서 정한 것이므로 다른 날로 메이데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²⁾하였으며, 1958년 10월 대한노총이 노동절 날짜를

1) 박홍근, 「메이데이(May Day)는 어떻게 근로자의 날이 되었나 - 노동기념일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제10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4.; 이하의 근로자의 날의 연혁과 관련된 사항은 동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2)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 “본래 메이·데이를 노동 사회에서 기념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공산당이 발기를 해서 공산당의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니만치 우리 전국 노민이나 또는 세계 노민들이 경축할 날을 정하려 하면 어느 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구태여 공산당이 세계를 정복할 목적으로 선전을 대대적으로

3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함으로써 1959년 3월 10일부터 대한노
총을 중심으로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 시작하였음.

1963년 정부는 3월 10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노동절’은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명명되었고, 이후 국회는 1994년 「근로자
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
월 1일로 변경되었음.³⁾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김주영의원안) 또
는 ‘노동절’(이수진의원안·박홍배의원안·이용우의원안)로 변경하는 내
용임. 이는 표준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는 ‘근로’와 비
교할 때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노
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임.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1940년대 일본이 국가에 대한 봉사 및 공헌
의 의미로써 대일본제국의 건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일본이 ‘근로
자’로서 조선인들을 동원한 역사적 배경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근로
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과거 노동 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하던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법률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겠음.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 당시 법안 심사 시 민주당과 노동단체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노동위원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
서」, 1994.3.)

4) 강희원, 「우리 헌법언어로서 『근로(勤勞)』와 『근로자(勤勞者)』」, 『한국노동법학』 제78
호, 한국노동법학회, 2021.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⁵⁾에서 공익전문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영계 대표, 노동계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음.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찬성의견으로 ①일반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친숙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②‘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이념적으로 국가주의적 생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현재 정부기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반대의견으로 ①‘근로자의 날’이 1963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고, ②일반 국민들에게 ‘노동’의 개념이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이미지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현행 노동법 관련 조항에서 모두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한편, ‘~절’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과거부터 노동자들이 사용한 ‘노동절’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절’을 국경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노동절’ 사용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반대의견으로 ‘~절’은

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근로자의 날 및 각종 포상제도 개선 관련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결과보고서, 2014.

고유명절이나 국경일⁶⁾과 같은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변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즉,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5월 1일을 기념하면서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 통칭하고 있고, ‘근로’와 ‘노동’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노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단어의 용법을 고려해 볼 때 ‘근로’와 ‘노동’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법률 문구는 헌법 등 상위 법률, 관행, 작성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칭 변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시행일 및 다른 법률의 개정(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의원 안 부칙)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주영의원안과 박홍배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이수진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또한 이수진의원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김주영의원안·박홍배의원안·이용우의원안은 ‘근로자의 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여 명칭을 정비하고 있음.

한편, 이용우의원안의 경우 ‘근로자의 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각각 변경함.

김주영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勤勞者の 날 제정에 관한 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⑥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16조제4호 중 “「勤勞者의 날制定에 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

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⑨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를 각각 “산업재해노동자”로 한다.
--	--	--	--

나. 검토의견

(1) 시행일

4건의 개정안 중 김주영의원안과 박홍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이수진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음.

법률을 개정할 때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인 동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또한 없다고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겠음.

(2) ‘근로자의 날’ 사용 법률의 정비

이수진의원안은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정비하고 있지 않은데, 단순한 명칭 변경의 경우 법체계의 통일성과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부칙을 통해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김주영·박홍배·이용우의원안과 같이 다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관세법」 등 총 7개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⁷⁾ 및 「선원법」⁸⁾도 ‘근로자의 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박홍배·이용우의원안과 같이 이들 법률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

이용우의원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각각 변경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4년 10월에 개정되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써 2025년 4월 28일 첫 번째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7) 「디자인보호법」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の日制定에 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8) 「선원법」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 · 3. (생략)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정부 주관 기념일 내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 념일	5. 11.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 부、국가유산 청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우주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항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4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행정 안전부·국가 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 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5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50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 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 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5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산업 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 원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 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7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